

의안번호	2215164
의 퇴 인	이주희의원
회 답 일	2025. 12. 29.
추 계 번호	25B689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신설	공사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제1항)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5조의2(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안 제35조의2)
 - 개정안은 공사업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해당 공사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해당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 발주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도급비용에서 현행 도급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음
 - 이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은 공사금액, 보험료율,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다만, 개정안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총공사금액과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정보통신공사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정보통신공사건수와 실적은 각각 465,391건, 19조 9,884억원 규모임
 - 발주기관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할 경우 정보통신공사건수와 실적은 2023년 기준으로 각각 202,521건, 5조 6,085억원 규모임

[표 1] 발주기관별 정보통신공사건수 및 실적: 2022년 및 2023년

(단위: 건, 백만원)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48,877	18,502,676	465,391	19,588,433
정부기관	55,186	2,056,458	60,277	2,227,671
지방자치단체	134,013	3,124,344	142,244	3,380,848
공공기관	21,281	2,239,257	22,596	2,148,264
공기업 및 공공단체	6,425	448,297	5,952	418,186
(주)KT	11,479	1,383,305	11,072	1,347,905
SK브로드밴드(주)	1,564	446,600	1,567	482,192
세종텔레콤(주)	1,260	38,622	1,168	27,127
SK텔레콤(주)	1,064	891,242	1,085	851,728
(주)LGU+	2,293	894,071	2,419	984,226
드림라인(주)	384	52,727	336	53,774
기타통신사업자	1,414	143,121	1,296	155,137
방송사(공중파)	582	57,793	541	48,656
종합유선방송사업자	6,047	280,867	5,410	257,042
위성방송사업자	131	80,244	118	78,634
민간부분	204,442	6,283,254	208,352	7,028,637
주한외국기관	771	9,696	534	7,559
해외	541	72,777	424	90,847

자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